

고열량·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25호, 2009. 5. 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가(營養價)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「고열량·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」을 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 내용

가. 고열량·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마련함(안 제3조)

- (1)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기준으로서 열량 및 영양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- (2) 영양성분 기준을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고, 구분에 따라 열량, 포화지방, 당류,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함량 기준을 설정함.

- (3)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학교판매 금지 및 광고 제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26호, 2009. 5. 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 영업자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「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」을 제정고시 하였습니다.